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0627    |
| 의 퇴 인 | 민형배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6.24. |
| 추계번호  | 25D2999    |

##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조(국가금융교육 계획의 수립)   |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금융교육계획(이하 “국가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(제3항)<br>1. 금융교육의 목표와 방향<br>2. 금융교육의 현황<br>3.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<br>4. 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<br>5. 금융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<br>6. 금융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<br>7.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<br>8.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6조(시·도 금융교육 계획의 수립) |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함)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함)의 금융교육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8조(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·운영)  | 금융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(제1항)<br>1. 국가계획의 수립<br>2.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<br>3.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<br>4.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<br>5. 제11조에 따른 금융교육 우수학교의 지정<br>6. 제21조에 따른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(제2항 및 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| 안 제10조(학교금융교육의 지원)     |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<br>1. 유치원의 학교금융교육에 관한 사항<br>2. 학교의 금융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<br>3. 학교금융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<br>4. 그 밖에 학교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5  | 안 제11조(금융교육 우수 학교의 지정) | 금융위원회는 학교 중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금융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금융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고(제1항),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교육 우수학교에 대하여 학교금융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6  | 안 제12조(교원등에 대한 지원)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금융교육에 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<br>1.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<br>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<br>3. 그 밖에 금융교육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7  | 안 제13조(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)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<br>1. 사회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br>2. 국가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·종교 단체 등의 사회금융교육<br>3. 사회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<br>4. 사회금융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금융교육에 대한 지원<br>5. 금융교육 관련 전문가에 대한 연수 및 파견<br>6. 그 밖에 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| 의무규정 |
| 8  | 안 제14조(사회금융교육의 실시)        |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9  | 안 제15조(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) | 시·도지사는 금융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금융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(제1항), 금융위원회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금융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금융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0 | 안 제16조(금융복지교육사)           | 금융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금융복지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금융복지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1 | 안 제18조(금융복지교육사의 보수교육)     | 금융복지교육사 중 학교·법인 및 사회금융교육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2 | 안 제19조(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)      |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, 금융복지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3 | 안 제21조(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)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하며(제1항),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금융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4 | 안 제23조(금융교육주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민의 금융교육 의지를 높이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년을 금융교육주간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5 | 안 제24조(국가금융교육센터의 지정)                      | <p>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융교육교재 및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li> <li>2.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</li> <li>3. 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</li> <li>4.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금융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에 대한 지원</li> <li>5.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</li> <li>6.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</li> </ol> <p>국가금융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6 | 안 제25조(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)                      | <p>시·도지사는 지역 내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광역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융교육교재 및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li> <li>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</li> <li>3. 기초금융교육센터에 대한 지원</li> <li>4. 국가금융교육센터 및 기초금융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</li> </ol> <p>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(제2항)</p> <p>금융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금융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(이하 “지역금융교육센터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금융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</p> | 재량규정 |
| 17 | 안 제27조(경비지원 및 보조)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8 | 안 제28조(금융교육실태조사 등)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금융교육<br>계획   | 안 제5조(국가금융교육계획의 수립)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             | 안 제6조(시·도 금융교육계획의 수립)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금융교육<br>위원회  | 안 제8조(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·운영)                      |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와 유사 기능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학교<br>금융교육   | 안 제10조(학교금융교육의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서 금융교육 및 금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             | 안 제11조(금융교육 우수학교의 지정)              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             | 안 제12조(교원등에 대한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 등이 교원, 학생, 사회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시 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사회<br>금융교육   | 안 제13조(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)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             | 안 제14조(사회금융교육의 실시)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 등이 교원, 학생, 사회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시 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             | 안 제15조(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)          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             | 안 제16조(금융복지교육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감독원이 2015년 9월부터 “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과정”과 “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”를 운영 중이며,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 관련 공공기관도 유사한 과정 운영 中 |
| 11 |              | 안 제18조(금융복지교육사의 보수교육)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             | 안 제19조(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)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금융교육<br>프로그램 | 안 제21조(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우수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지정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 | 금융교육<br>주간   | 안 제23조(금융교육주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“금융의 날”(10월 마지막 화요일)을 기념하고 있으며, 2024년에는 「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」 개최               |
| 15 | 금융교육<br>센터   | 안 제24조(국가금융교육센터의 지정)               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 |              | 안 제25조(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)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 | 경비지원         | 안 제27조(경비지원 및 보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 | 실태조사         | 안 제28조(금융교육 실태조사 등)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“금융역량 조사” 실시 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금융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, 학교 금융교육과 사회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,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가금융교육센터와 지역금융교육센터를 지정·운영하려는 것임
  - 교육계획 수립: 안 제5조 및 제6조
  - 금융교육위원회 설치: 제8조
  - 학교금융교육 실시: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
  - 사회금융교육 실시: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
  -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: 안 제21조
  - 금융교육센터 지정: 안 제24조 및 제25조
  - 기타: 안 제23조(금융교육주간), 안 제27조(경비지원 및 보조), 안 제28조(금융교육 실태조사)<sup>1)</sup>
- 제정안에 따라 학교 금융교육과 사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,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금융교육센터를 지정·운영하는 경우, 운영비·사업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 - 금융교육 우수학교 지정(안 제11조), 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(안 제13조), 사회금융교육기관의 지정(안 제15조), 우수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지정(안 제21조제3항), 국가금융교육센터의 지정(안 제24조), 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(안 제25조), 경비지원 및 보조(안 제27조)는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제도로써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 - 다만, 금융교육계획의 수립(안 제5조 및 안 제6조), 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(안 제8조), 학교 금융교육(안 제10조 및 제12조), 사회 금융교육(안 제14조, 안 제16조·제18조·제19조),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(안 제21조제1항), 금융교육주간(안 제23조)은 현행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등이 시행 중인 사항이므로,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---

1) 제정안에 따른 금융교육 실태조사와 유사한 조사로 3년마다 실시되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,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 조사에 1억 4,070만원(2023년 기준)이 소요되었음

□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구체화된 정보가 필요함

- 특히 제정안에 따라 금융교육의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국가금융교육센터와 지역금융교육센터는 그 지정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,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「경제교육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경제교육센터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어, 현시점에서 금융교육센터의 규모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[표 1] 금융교육센터와 경제교육센터의 비교

| 구분 | 국가금융교육센터<br>(제정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경제교육센터<br>(「경제교육지원법」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목적 | 지역 내 금융교육의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 | 1. 금융교육교재 및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<br>4.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2.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3. 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4.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금융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5.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6.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               | 5.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<br>6.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|

□ 따라서, 현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보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장삼열 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|
| 장삼열 | 02-6788-4831 | jsy@na.go.kr |

## □ 초·중등학교 금융교육 현황

- (교과 교육과정) 초·중등교육과정에서는 사회, 실과, 기술·가정, 통합사회, 경제 등 관련 과목을 통해 학생의 실생활과 연계한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경제·금융교육 추진 중

\* (초등학교) 사회, 실과, (중학교) 사회, 기술·가정, (고등학교) 통합사회 등 관련 과목 모든 학생 필수과목으로 이수

### ■ 학교급별 금융교육 관련 교과 및 주요 성취기준 ■

| 학교급 | 교과(목)         | 주요 성취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초   | 사회(3~4학년)     | [4사07-01]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,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탐색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실과(5~6학년)     | [6실02-01] 시간이나 용돈과 같은 생활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하고, 생활자원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탐색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   | 사회            | [9사(일사)08-02]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분석하고,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자산 및 신용 관리 방안을 계획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기술·가정         | [9기가02-12]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   | 통합사회          | [10통사2-03-03]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을 설계하고, 경제적,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금융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. |
|     | 신설 금융과 경제생활   | [12금융01-02]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나타난 금융 서비스의 변화된 특징을 이해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재구조화 인간과 경제생활 | [12인경03-02] 자유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경제와의 비교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탐구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|

- 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·적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경제·금융교육이 가능하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련 과목 신설·재구조화\*

\* 2개 융합 선택과목(신설 금융과 경제생활, 재구조화 인간과 경제활동)

- (범교과학습주제) 경제·금융교육을 범교과학습주제\*로 지정하여 교과 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 운영

\* (경제·금융교육 세부 주제)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, 창업(기업가) 정신, 복지와 세금, 금융생활, 지적재산권 등

□ 금융감독원 등 16개 교육기관\*의 교육인원은 총 105만 5,544명\*\*

\* (유관기관) 금감원·예보·서금원·신복위·주금공·신보 (교육기관) 청교협·시교협·소비자보호재단 (금융협회) 은행연합회·투교협·생보협회·손보협회·저축은행중앙회·신협중앙회·여신협회

\*\* 실시시간이 아닌 온라인 교육(189.9만명) 및 금융회사를 통한 초·중·고 1사1교 금융교육(48.0만명)은 제외된 수치

○ (기관별\*) 금감원이 33.4만명으로 31.6%를 차지하며, 신복위 19.2만명(18.2%), 청교협 14.2만명(13.4%), 서금원 12.4만명(11.8%), 시교협 6.9만명(6.5%) 順

\* 각 교육기관은 기관별 실무협의체(워킹그룹) 참여 계층을 중심으로 교육 실시

○ (대상별) 청소년이 33.9만명으로 32.1%를 차지하며, 대학생과 군장병 각각 18.7만명(17.7%), 취약계층\*과 고령층이 각각 15.6만명(14.7%) 및 11.9만명(11.3%) 順

\* 개인회생 등 신용유의자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장애인 등

#### '24년중 기관별·대상별 교육실적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(단위 : 명, %)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구 분     | 청소년               | 대학생               | 군장병               | 고령층               | 취약층               | 기 타*            | 합 계                  | (비중)   |
| 금감원     | 26,915            | 176,962           | 57,465            | 21,645            | 10,920            | 19,948          | 333,803              | (31.6) |
| 예 보     | 12,017            | 126               | 14,929            | 3,366             | 5,510             | 5,038           | 40,986               | (3.9)  |
| 서금원     | 20,399            | 1,565             | 60,068            | 16,880            | 23,988            | 1,222           | 124,122              | (11.8) |
| 신복위     | 20,638            | 1,469             | 50,692            | 1,513             | 110,462           | 7,448           | 192,222              | (17.3) |
| 주금공     | 152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325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811             | 1,388                | (0.1)  |
| 신 보     | 53                | 436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40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1,182           | 1,711                | (0.2)  |
| 청교협**   | 137,459           | 44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235               | 3,637             | 153             | 141,528              | (13.4) |
| 시교협**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68,795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68,795               | (6.5)  |
| 소비자보호재단 | -                 | 35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200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40              | 275                  | (0.0)  |
| 은행연     | 22,543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4,152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26,695               | (2.5)  |
| 투교협     | 13,047            | 2,143             | 1,550             | 560               | 399               | 4,829           | 22,528               | (2.1)  |
| 생보협     | 47,163            | 4,249             | 2,379             | 1,322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6,378           | 61,491               | (5.8)  |
| 손보협     | 23,547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26              | 23,573               | (2.2)  |
| 저축은행중앙회 | 2,155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2,155                | (0.2)  |
| 신협중앙회   | 11,048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140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11,188               | (1.1)  |
| 여신협     | 2,127             | 36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 921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3,084                | (0.3)  |
| 합 계     | 339,263<br>(32.1) | 187,165<br>(17.7) | 187,083<br>(17.7) | 119,173<br>(11.3) | 155,837<br>(14.7) | 67,023<br>(6.4) | 1,055,544<br>(100.0) |        |

\* 일반 성인, 교사, 금융교육 강사, 등      \*\* 청교협: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, 시교협: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